

러 시 아

對CIS 직접투자절차(I)
-현지사무소 및 현지법인 설치를 중심으로-

CIS 국가들의 경제는 구소련 붕괴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생산감소와 가격상승으로 극심한 불안양상을 보여 왔다. 이는 구소련 공화국간협력체계의 붕괴, 투자재원의 부족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열악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는 政情不安으로,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는 내전으로 국론이 장기간 분열되어 왔다. 이에 따라 CIS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대동구투자의 50%수준에 머물렀다. 1995년 들어 아르메니아가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입을 피해를 조기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타지키스탄이 심각한 경제침체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내전 때문이다. 한편, 키르기즈가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사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IMF의 권고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정치안정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CIS 국가들에서 체제변혁기 동안 지속된 정치불안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경제개혁도 본격화되고 있는바, 내년부터는 각 국가들의 경제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 WTO체제의 정식출범을 계기로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국제화, 세계화의 발걸음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계로 기업의 세계화는 과거 수출지상주

〈표 1〉 CIS 國家들의 1995년 上半期 主要經濟指標(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구 분	國內總生産		工業生産		消費者物價指數(倍)	
	'94년	'95년상반기	'94년	'95년상반기	'94년	'95년상반기
러시아	-15	-4.0	-20.9	-3	3.0	3.2
우크라이나	-9	-11.4	-27.7	-13.6	5.0	5.5
벨로루시	-20	-12.0	-19.3	-8.2	23.2	19.8
카자흐스탄	-25	-11.4	-28.5	-15.9	19.8	5.4
우즈베키스탄	-4	-2.0	1.0	-6.2	16.5	8.0
키르기즈스탄	-26	-8.9	-24.5	-17.2	3.8	1.7
투르크메니스탄	-25.0	-20.0	28.1	...
타지키스탄	-12	-20.5	-30.8	-23.3	3.4	1.8
아제르바이잔	-22	-17.1	-24.8	-27.0	18.8	10.7
아르메니아	-2	12.8	6.9	11.3	50.6	4.5
그루지아	-30	...	-39.7	-21.5
몰도바	-30	-19.4	-29.9	-21.5	5.9	1.4

자료 : CIS 통계위원회

러 시 아

의 단순한 '성장수단'이 아니라 세계일류기업과의 경쟁속에서 '생존수단'임과 동시에 세계 단일시장화에 따른 '세계경영'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구체된 메카니즘이 새로운 시장확보와 적극적인 해외직, 간접투자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1992년 이후 한-러간의 교역증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러시아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러시아의 첨단기술과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이 갖는 협력가능성 때문에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와는 문화적, 역사적, 정치·경제적 이질감 때문에 우리정부나 기업들이 쉽게 러시아를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1990년 수교 이후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러시아 투자 형태 중 정부나 기업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현지사무소 및 현지법인설치와 제도적 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재원 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연락사무, 광고, 선전활동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대표자 사무실" 또는 "연락사무실"로 불리운다.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본사에서의 송금으로 조달된다. 즉 주재원사무소에 대한 경비의 송금 등은 외국환관리법상 자본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이 자유로이 필요한 비용을 송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국의 수속으로는 상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 또는 상법에 근거한 외국회사의 등록 또는 상법 등록은 필요치 않다. 따라서 현지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표 2〉 한국-CIS 국가별 교역추이(단위 : 천 달러, %)

구 분	1992	1993	1994	1995(1~8)	
러시아	계	859,142(-28.5)	1,575,992(83.4)	2,191,563(39.1)	1,954,863(48.8)
	수출	364,609(-41.7)	601,171(64.9)	961,911(60.0)	766,365(42.8)
	수입	494,533(-14.3)	974,821(97.1)	1,229,652(26.1)	1,188,498(53.0)
우크라이나	계	0 (-)	77,001 (-)	134,731 (75.0)	111,639(24.2)
	수출	0 (-)	22,733 (-)	19,945 (-12.3)	11,589(-28.0)
	수입	0 (-)	54,268 (-)	114,786(111.5)	100,050(35.6)
우즈베키스탄	계	0 (-)	87,370 (-)	342,688(292.2)	268,857(166.4)
	수출	0 (-)	70,096 (-)	237,281(238.5)	168,508(300.7)
	수입	0 (-)	17,274 (-)	105,407(510.2)	100,349(70.4)
카자흐스탄	계	0 (-)	87,552 (-)	88,125 (0.7)	70,004(33.8)
	수출	0 (-)	40,742 (-)	26,689(-27.1)	32,114(121.1)
	수입	0 (-)	46,810 (-)	61,436(31.2)	37,890 (0.2)

러 시 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국의 사전조사가 중요하다. 현지국의 어떤 경우 주재원 사무소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같은 경우 구비서류는 본사의 정관, 등기부초본 등의 영문 또는 현지공용어로 번역, 공증과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등을 제출 신고한다.

해외지점은 해외에서 독립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외직접투자"로써 규제된다. 이런 경우 그 내용과 실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 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외국에서의 지점설치 또는 확장에 관계되는 자금지불에 관한 신고서"에 따라 행해진다. 통상부장관은 신고된 거래가 국제적 약속의 이행,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투자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외화송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경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에 의해 조달된다. 현지의 수속으로는 현지의 회사법,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등록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런것은 현지의 소정양식에 따라 하게되며 지점설치의 구비서류는 본사의 정관 등기부 초본 등의 영문 또는 현지공용어로 번역된 공증서, 지점의 위치와 대표자의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초본 등이다. 국가에 따라 영업을 하기위해 별도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의 지원, 세무, 노동, 사회보험 등에 대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법인이란 현지의 상법, 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또 우리기업의 출자비율이 100%에 가깝게 본사의 관리하에 있는 외국법인을 현지법인이라고 하는 경

우도 있고, 출자비율이 100% 이하라도 외국환관리법상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을 모두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법인설립 방법은 해외지점의 설치와 동일하며 외국환관리법상 대외직접투자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부에 "대외직접투자에 관계되는 외환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서"를 사용하여 사업내용, 생산계획, 판매계획, 출자자 구성 등을 기입해서 신고한다. 현지의 수속은 자본수입에 대한 현지당국의 인가를 취득한 후에 현지의 상법 또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다. 현지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의 형태, 자본금, 사업내용, 임원구성,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방법 등을 결정해야지만 상세한 사항은 현지변호사 및 회계사와 협의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의 주재원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주재원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인가, 등기의무를 살펴보면,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이 러시아에서 각종활동을 수행하려면 활동의 종류에 따라 등기(Registration)를 해야하는 경우, 주재원사무소, 지점인가만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경우, 주재인가 또는 등기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합작 또는 100% 단독투자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합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주재원사무소, 지점인가(Affiliate)만으로도 합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재원 사무소, 지점은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본사의 사무소, 지점에 불과하나 독립적인 경제단위로서 합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색이 있다.

러 시 아

외국인이 시장조사, 사업파트너 발굴, 계약 체결 준비 등 영업이 아닌 활동을 하려면 주재인가(Accreditation)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나,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영업활동의 수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가기업(Accredited Firms)과 비인가기업(Non-accredited Firms)은 법적 인 대우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나, 사실상의 기업신용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러시아기업과의 접촉시 인가증(Accreditation Certificate)을 제시하여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정상적인 활동임과 인가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고, 러시아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때 인가증을 제시하면 구좌개설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고 또한 기타 러시아입국 초청장 발급 및 사무용품 통관료 면제, 비자기간 연장, 복수입국비자 발급시에 발급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사소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체로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가기업과 비인가기업의 활동범위나 법적 경우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다.

둘째, 러시아의 주재원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구비요건은 ①주재인가 혹은 합작회사 등기, ②주재카드발급, ③복수비자발급, ④세무관서 신고, ⑤연금지급신고: 현지인 고용시에만 해당, ⑥은행구좌개설 등이다.

셋째, 주재인가제도는 과거 사회주의 통치하의 구소련사회의 폐쇄성을 유지하면서 체제선전, 선진기술 도입 등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외국기구나 외국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소련내로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도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통제, 계획경제하에서는 주택,

인력, 사무실 등 활동기반이 모두 국가소유로 관료조직에 의해 관리되었기 때문에 외국기업 또는 기자들은 주재인가를 받지않고는 활동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구체제하에서는 인가제도가 사회방위의 의미를 가졌고 또한 외국기업들도 인가를 받음으로써 활동기반을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시장경제도입에 따라 사회가 개방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자유화되고, 진출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주택, 인력 등 활동기반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가제도의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대외경제성, 상공회의소 등 인가기관은 인가수수료와 관련서비스 수수료 수입목적으로 인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지법인, 주재원사무소, 지점인가로 사실상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러시아연방 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진출 외국회사가 인가만을 받는 경우와 등기를 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인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제도로서 앞으로 폐지되거나 지방관청 및 세무관서예의 신고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예견된다. 등기를 하려면 세무관서예의 신고가 강제되거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세무관서예의 신고가 강제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인가기업과 비인가기업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가기업에게는 비자발급 등에 있어서 사소한 이점이 부여되는데 불과하다. 인가기업과 비인가기업의 같은 점은 세무관서예의 신고가 강제되지 않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과세대상, 법률상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점이

러 시 아

다. 인가기업의 주요이점은 기업활동에 인가기관의 공식적 신용보장, 은행구좌 개설용이, 비자발급 등 각종 서비스수수료 할인 혜택 등이 다.

인가기업과 비인가기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가에 의해 얻는 실질적인 이점이 거의 없고, 따라서 구태여 대표사무소인가를 받아 활동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인가제도와 지점登記 제도와의 차이가 세무관서에의 신고강제정도에 불과한 반면,登記된 지사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登記수수료는 약 20달러 정도에 불과하나 인가수수료는 2천 달러, 또한 대표사무소에 대해서 특별한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진출기업이 계약결절 등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하고, 영업수익에 대해서 납세할 의사가 있다면登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재인가기관으로는 상공회의소, 대외경제부, 과학기술정책부, 러시아중앙은행, 기타 인가기관의 승인받은 인가대행기관 다수가 있다. 그 외 현물투자시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물투자시엔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수입세를 면제하는데 이 경우 정관상에 현물투자품목을 명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영업활동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납부하게 되겠지만, 러시아는 모든 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선에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다만, 1993년 1월 1일 이전 설립된

합작회사 및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현물투자시 부가가치세 면제하는데, 관행상 러시아측 파트너가 현물투자에 따른 통관절차 및 부가세 납부절차를 이행함이 보통이다.

상사주재원, 국제기구 근무자는 러시아 도착 후 1년내에는 개인용품을 무관세로 반입가능하다. 외화반입시에는 공항, 항만 등의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보통 입국시에는 소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외화반입 신고를 대체한다. 출국시에는 상기 소지품신고서를 공항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시 반입 외화보다 많은 외화의 반출은 금지된다. 또한 러시아 체제중 소지품신고서를 분실시에는 원칙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기타 은행으로부터 외화반출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대러시아 현지투자시 즉 현지거점설치에 다른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았지만, 러시아 정부내의 보수적 관료주의와 일부 관료의 부패 때문에 상당부분 비공식거래절차가 부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對러시아 직접투자 및 현지영업활동에 대한 러시아 마피아의 간섭과 보안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金 容 煥

〈KIST 한·러센터, 선임연구원〉